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 | | | |
|---|---|---|------------------------------------|---|---|--|------------|-----|--------|--|
| 2-2 표 내용 중 3번째 행 자구수정 | 대형비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이상인 법인) 및 금융기관 | 대형비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이상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법인) 및 금융기관 | | | | | | | | |
| 2-3 주1 표 | 가. 자본금이 5억 이상 필요한 공인회계사법상 특수법인이며 공인회계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적용받음. | 가. 자본금이 5억 이상 및 공인회계사 7인 이상 (사원 3인 이상) 필요한 공인회계사법상 특수법인이며 공인회계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적용받음. | | | | | | | | |
| 2-11 하단 박스내용중 밑에서 5번째줄 |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직전년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 |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직전년도 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 | | | | | | | | |
| 2-16 사례문제3 제목 | 사례문제 3: <u>외감법 개정 문제</u> | 사례문제 3: <u>감사관련법률규정 취지</u> | | | | | | | | |
| 사례 표헤드 수정 |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정사항</th> <th>취 지</th> </tr> </thead> <tbody> <tr> <td>(내용동일)</td> <td></td> </tr> </tbody> </table> | 개정사항 | 취 지 | (내용동일) | | <table border="1"> <thead> <tr> <th>관련 법률 및 규정</th> <th>취 지</th> </tr> </thead> <tbody> <tr> <td>(내용동일)</td> <td></td> </tr> </tbody> </table> | 관련 법률 및 규정 | 취 지 | (내용동일) | |
| 개정사항 | 취 지 | | | | | | | | | |
| (내용동일) | | | | | | | | | | |
| 관련 법률 및 규정 | 취 지 | | | | | | | | | |
| (내용동일) | | | | | | | | | | |
| 2-17 풀이 표 중 10번째행 | <table border="1"> <tr> <td>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 (회계법인만 감사 가능, 감사인 유지제도 등) 적용하려는 제도</td> <td>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및 상장-비상장사 간 회계 규제차이 해소</td> </tr> </table> |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 (회계법인만 감사 가능, 감사인 유지제도 등) 적용하려는 제도 |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및 상장-비상장사 간 회계 규제차이 해소 | <table border="1"> <tr> <td>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 (회계법인만 감사 가능, 감사인 유지제도 등) 적용하려는 제도</td> <td>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및 상장-비상장사 간 회계 규제차이 해소</td> </tr> </table> |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 (회계법인만 감사 가능, 감사인 유지제도 등) 적용하려는 제도 |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및 상장-비상장사 간 회계 규제차이 해소 | | | | |
|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 (회계법인만 감사 가능, 감사인 유지제도 등) 적용하려는 제도 |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및 상장-비상장사 간 회계 규제차이 해소 | | | | | | | | | |
|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 (회계법인만 감사 가능, 감사인 유지제도 등) 적용하려는 제도 |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및 상장-비상장사 간 회계 규제차이 해소 | | | | | | | | |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 | | | | | | | | | | | | | |
|--|---|---|-----------------|-----------------------|--|---|-----------------------------------|-----------------|--|------------------------|---|-----------------------------------|--------------|--|--------------|--------------------------------------|-----------------|--|-------------------|--|
| <p>2-18 사례문제3 풀이에 (*1)주식 표 추가</p> | <p style="text-align: center;"><u><주식 추가></u></p> | <p>(*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대형비상장법인</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p>1. 정의</p> <p>(1)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 단, 아래의 경우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p> <p>(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p>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p> <p>2.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정과 적용받지 않는 규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동일하게 적용받지 않는 규정</th> </tr> </thead> <tbody> <tr> <td>(1)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규정</td> <td>(1) 등록법인만이 감사할 수 있는 규정</td> </tr> <tr> <td>(2)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위원회 선임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후 감사 선임)</td> <td>(2) 자산총액 2조 이상 사업연도개시일 전 감사인 선임규정</td> </tr> <tr> <td>(3) 감사인 유지제도</td> <td>(3)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우 4개 사업연도부터 2/3 이상 교체 규정</td> </tr> <tr> <td>(4) 감사인 교체제도</td> <td>(4)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td> </tr> <tr> <td>(5) 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td> <td></td> </tr> <tr> <td>(6)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td> <td></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 대형비상장법인 | | <p>1. 정의</p> <p>(1)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 단, 아래의 경우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p> <p>(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p>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p> <p>2.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정과 적용받지 않는 규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동일하게 적용받지 않는 규정</th> </tr> </thead> <tbody> <tr> <td>(1)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규정</td> <td>(1) 등록법인만이 감사할 수 있는 규정</td> </tr> <tr> <td>(2)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위원회 선임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후 감사 선임)</td> <td>(2) 자산총액 2조 이상 사업연도개시일 전 감사인 선임규정</td> </tr> <tr> <td>(3) 감사인 유지제도</td> <td>(3)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우 4개 사업연도부터 2/3 이상 교체 규정</td> </tr> <tr> <td>(4) 감사인 교체제도</td> <td>(4)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td> </tr> <tr> <td>(5) 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td> <td></td> </tr> <tr> <td>(6)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td> <td></td> </tr> </tbody> </table> | |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정 |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는 규정 | (1)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규정 | (1) 등록법인만이 감사할 수 있는 규정 | (2)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위원회 선임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후 감사 선임) | (2) 자산총액 2조 이상 사업연도개시일 전 감사인 선임규정 | (3) 감사인 유지제도 | (3)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우 4개 사업연도부터 2/3 이상 교체 규정 | (4) 감사인 교체제도 | (4)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 (5) 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 | | (6)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 | |
| 대형비상장법인 | | | | | | | | | | | | | | | | | | | | |
| <p>1. 정의</p> <p>(1)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 단, 아래의 경우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p> <p>(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p>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p> <p>2.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정과 적용받지 않는 규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동일하게 적용받지 않는 규정</th> </tr> </thead> <tbody> <tr> <td>(1)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규정</td> <td>(1) 등록법인만이 감사할 수 있는 규정</td> </tr> <tr> <td>(2)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위원회 선임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후 감사 선임)</td> <td>(2) 자산총액 2조 이상 사업연도개시일 전 감사인 선임규정</td> </tr> <tr> <td>(3) 감사인 유지제도</td> <td>(3)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우 4개 사업연도부터 2/3 이상 교체 규정</td> </tr> <tr> <td>(4) 감사인 교체제도</td> <td>(4)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td> </tr> <tr> <td>(5) 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td> <td></td> </tr> <tr> <td>(6)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td> <td></td> </tr> </tbody> </table> | |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정 |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는 규정 | (1)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규정 | (1) 등록법인만이 감사할 수 있는 규정 | (2)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위원회 선임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후 감사 선임) | (2) 자산총액 2조 이상 사업연도개시일 전 감사인 선임규정 | (3) 감사인 유지제도 | (3)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우 4개 사업연도부터 2/3 이상 교체 규정 | (4) 감사인 교체제도 | (4)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 (5) 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 | | (6)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 | | | | | | |
|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정 |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는 규정 | | | | | | | | | | | | | | | | | | | |
| (1)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규정 | (1) 등록법인만이 감사할 수 있는 규정 | | | | | | | | | | | | | | | | | | | |
| (2)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위원회 선임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후 감사 선임) | (2) 자산총액 2조 이상 사업연도개시일 전 감사인 선임규정 | | | | | | | | | | | | | | | | | | | |
| (3) 감사인 유지제도 | (3)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우 4개 사업연도부터 2/3 이상 교체 규정 | | | | | | | | | | | | | | | | | | | |
| (4) 감사인 교체제도 | (4)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 | | | | | | | | | | | | | | | | | | |
| (5) 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 | | | | | | | | | | | | | | | | | | | | |
| (6)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 | | | | | | | | | | | | | | | | | | | | |
| <p>3-11 내용추가</p> | <p>(3) 독립성의 최소유지기간</p> <p>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업무수임기간 동안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수임기간은 인증업무팀이 업무를 착수한 일로부터 인증보고서 발행일까지이다. 반복적인 인증업무의 수임기간 종료일은 어느 일방의 계약당사자가 전문적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고한 일자와 최종 인증업무보고서의 발행일자 중 더 나중 일자로 한다(윤리기준 290.31).</p> <p style="text-align: center;"><u><추 가></u></p> | <p>(3) 독립성의 최소유지기간</p> <p style="text-align: center;"><u><내용 동일></u></p> <p>감사대상 재무제표의 회계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착수한 경우, 감사업무기간 동안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비인증업무를 해당 감사업무를 착수하기 이전에 제공한 경우, 이러한 비인증업무를 해당 재무제표 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해당 위협이 명백하</p> | | | | | | | | | | | | | | | | | |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 <p>게 경미한 경우 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안전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장치 (윤리기준 290.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해 의뢰인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이미 제공된 비인증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문제를 논의 ② 비인증업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당해 의뢰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 입수 ③ 비인증업무를 제공한 구성원을 해당 재무제표 감사업무에서 제외 ④ 다른 회계법인에게 해당 비인증업무의 결과를 검토하게 하거나, 해당 비인증업무를 재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타 회계법인이 해당 비인증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 </div> |
| <p>3-15 ~ 3-16 (6) 내용 전체 교체</p> | <p>(6) 인증업무유형(주장기준 인증업무와 직접보고 인증업무)과 독립성 간의 관계</p> <p>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등은 공익보호를 위하여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에는 “주장기준 인증업무”(assertion-based engagement)와 “직접보고 인증업무”(direct reporting engagement)가 있으며 모든 인증업무는 개업공인회계사, 인증대상업무 책임자 및 의도된 이용자의 삼자가 관련된다.</p> <p>① 주장기준 인증업무</p> <p>재무제표감사업무(financial statement audit engagement) 등과 같은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는 인증대상의 평가와 측정은 그 인증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에 의해 수행되며, 인증대상정보는 인증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가 의도된 이용자에게 주장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직접보고 인증업무”에서는 개업공인회계사가 인증대상을 직접 평가하고 측정하거나, 평가와 측정을 수행한 책임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는데, 그러한 확인서는 의도된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인증대상</p> | <p>(6) 감사제한대상기업(Restricted Entity) 및 독립성 준수 대상(Covered persons)</p> <p>① 감사제한대상기업(Restricted Entity)</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p>공인회계사 윤리기준상 감사고객에는 기본적으로 감사대상회사의 지배회사와 감사대상회사의 종속회사, 그리고 동일지배하에 있는 회사가 포함됨. 단, 공인회계사법상은 감사고객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만 적용되며 지분법적용회사는 적용대상이 아님.</p>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 | | | | | | | | | | | |
|------------|--|---|----|--------|----|----------|------|---|--------------|---|------------|------|--------------------------------------|-------------|---|--------|----------------|--|
| | <p>정보는 인증업무보고서의 일부로서 의도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p> <p>재무제표감사업무는 잠재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감사업무에서는 정신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외관상 독립성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등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을 위해서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성 요구사항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대상정보(재무제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임직원간의 특정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인증대상(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 의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p> <p>재무제표감사외의 “주장기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의뢰인(인증대상업무 책임자, 즉 인증대상정보뿐만 아니라 인증대상에도 책임을 지는 자일 수 있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성 요구사항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의뢰인 간의 특정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인증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 의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재무제표감사외의 대부분의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인증대상정보와 인증대상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인증대상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환경전문가가 의도된 이용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실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업공인회계사가 이 보고서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환경전문가는 인증대상정보에 책임을 지고 기업은 인증대상(지속가능성실무)에 책임을 진다.</p> | <p style="text-align: center;">〈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른 독립성 준수 대상 : 한국공인회계사 교육자료 참조〉</p> <p>1) 상장기업 : 제한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0%;">회계상 분류</th> <th style="width: 65%;">정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Upstream</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배기업</td> <td>직·간접적으로 감사고객을 지배하는 기업으로서, 감사고객이 해당 회사에 중요^(*)한 경우 해당 기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의적 영향력 행사기업</td> <td>기업이 감사고객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감사고객에 대한 지분이 그 기업에게 중요^(*)한 경우 당해 기업</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DownStream</td> <td style="text-align: center;">종속기업</td> <td>감사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즉, 감사고객의 종속기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계기업 및 공동기업</td> <td>감사고객 또는 감사고객의 종속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을 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고, 해당 지분이 감사고객 및 감사고객의 종속기업에 중요^(*)한 경우 해당 기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Sis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동일지배하 기업(자매기업)</td> <td>감사고객과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자매기업”)으로서 감사고객 및 자매기업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지배기업에게 감사고객 및 자매기업이 모두 중요^(*)한 경우 그 자매기업</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통상, 실무적으로 중요성은 10% Rule을 적용하여 계산(연결총자산 10% or 연결세전이익 10%)</p> <p>2) 비상장기업 : 감사고객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p> | 구분 | 회계상 분류 | 정의 | Upstream | 지배기업 | 직·간접적으로 감사고객을 지배하는 기업으로서, 감사고객이 해당 회사에 중요 ^(*) 한 경우 해당 기업 | 유의적 영향력 행사기업 | 기업이 감사고객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감사고객에 대한 지분이 그 기업에게 중요 ^(*) 한 경우 당해 기업 | DownStream | 종속기업 | 감사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즉, 감사고객의 종속기업)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감사고객 또는 감사고객의 종속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을 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고, 해당 지분이 감사고객 및 감사고객의 종속기업에 중요 ^(*) 한 경우 해당 기업 | Sister | 동일지배하 기업(자매기업) | 감사고객과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자매기업”)으로서 감사고객 및 자매기업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지배기업에게 감사고객 및 자매기업이 모두 중요 ^(*) 한 경우 그 자매기업 |
| 구분 | 회계상 분류 | 정의 | | | | | | | | | | | | | | | | |
| Upstream | 지배기업 | 직·간접적으로 감사고객을 지배하는 기업으로서, 감사고객이 해당 회사에 중요 ^(*) 한 경우 해당 기업 | | | | | | | | | | | | | | | | |
| | 유의적 영향력 행사기업 | 기업이 감사고객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감사고객에 대한 지분이 그 기업에게 중요 ^(*) 한 경우 당해 기업 | | | | | | | | | | | | | | | | |
| DownStream | 종속기업 | 감사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즉, 감사고객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 | |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감사고객 또는 감사고객의 종속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을 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고, 해당 지분이 감사고객 및 감사고객의 종속기업에 중요 ^(*) 한 경우 해당 기업 | | | | | | | | | | | | | | | | |
| Sister | 동일지배하 기업(자매기업) | 감사고객과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자매기업”)으로서 감사고객 및 자매기업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지배기업에게 감사고객 및 자매기업이 모두 중요 ^(*) 한 경우 그 자매기업 | | | | | | | | | | | | | | | |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
|---|---|--|--------|-----------|---|---|
| | <p>재무제표감사업무외의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인증대상정보에 책임을 지고 인증대상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대상정보 책임자(인증의뢰인)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등과 인증대상 책임자간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독립성 훼손위협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직접보고 인증업무 “직접보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의뢰인(인증대상업무 책임자)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p> | <p>② 독립성 준수 대상(Covered persons)</p> <table border="1" data-bbox="1205 336 2105 1114"> <thead> <tr> <th data-bbox="1205 336 1572 384">공인회계사법</th> <th data-bbox="1572 336 2105 384">공인회계사윤리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205 384 1572 1114"> 회계법인, 회계법인의 사원(파트너)과 그 배우자,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와 그 배우자 </td> <td data-bbox="1572 384 2105 1114"> 가. 회계법인, 감사팀원과 그 직계가족 등은 독립성을 준수해야 함. 용역팀의 파트너와 관리자 직급 직원도 감사고객에 대해 재무적 이해관계에 대한 제한이 있음. 나. 감사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음의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업무담당 파트너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또는 감시하는 자 ▶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이나 산업별 특정 문제, 거래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자 ▶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공한 자로서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한 자 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소속된 직원 중 재무제표감사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 </td> </tr> </tbody> </table>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윤리기준 | 회계법인, 회계법인의 사원(파트너)과 그 배우자,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와 그 배우자 | 가. 회계법인, 감사팀원과 그 직계가족 등은 독립성을 준수해야 함. 용역팀의 파트너와 관리자 직급 직원도 감사고객에 대해 재무적 이해관계에 대한 제한이 있음. 나. 감사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음의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업무담당 파트너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또는 감시하는 자 ▶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이나 산업별 특정 문제, 거래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자 ▶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공한 자로서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한 자 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소속된 직원 중 재무제표감사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 |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윤리기준 | | | | | |
| 회계법인, 회계법인의 사원(파트너)과 그 배우자,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와 그 배우자 | 가. 회계법인, 감사팀원과 그 직계가족 등은 독립성을 준수해야 함. 용역팀의 파트너와 관리자 직급 직원도 감사고객에 대해 재무적 이해관계에 대한 제한이 있음. 나. 감사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음의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업무담당 파트너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또는 감시하는 자 ▶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이나 산업별 특정 문제, 거래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자 ▶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공한 자로서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한 자 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소속된 직원 중 재무제표감사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 | | | | | |
| 3-16 ❖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 독립성 규정정리 ❖ 그림 중 일부 자구수정 | <p>②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p> | <p>②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 | | |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17 (주2) 하단에 표 추가</p> | <p>(주2) 다음과 관련된 채권, 채무는 제외한다. ① ~ ⑥ 내용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u><표 추가></u></p> | <p>(주2) 다음과 관련된 채권, 채무는 제외한다. ① ~ ⑥ 내용 동일</p> <table border="1" data-bbox="1200 389 2107 1114">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현행</th> <th colspan="2">개정 후</th> </tr> <tr> <th>감사계약 체결 전</th> <th>감사기간 중</th> </tr> </thead> <tbody> <tr> <td>주식·출자지분</td> <td>금지</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현행유지</td> </tr> <tr> <td>예금·적금</td> <td rowspan="2">3천만원 한도 내 허용 (예금자보호가 되는 경우 최대 8천만원 미만 허용)</td> <td rowspan="2">감사계약 체결 전 가입·차입한 금액 유지 허용^(*)</td> <td rowspan="2">신규 또는 증액 금지^(*)</td> </tr> <tr> <td>증권예탁금</td> </tr> <tr> <td>담보대출</td> <td>제한없이 허용</td> <td></td> <td></td> </tr> <tr> <td>신용대출</td> <td rowspan="2">3천만원 한도 내 허용</td> <td></td> <td></td> </tr> <tr> <td>보험</td> </tr> <tr> <td>신용카드</td> <td>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현행유지</td> </tr> <tr> <td>회원권·시설물 이 용권 등</td> <td>표준약관이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경우 제한없이 허용</td> <td>표준약관이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경우 유지 허용</td> <td>신규 또는 증액 금지</td> </tr> <tr> <td>상기 항목 외 상거래 및 사인간 채권·채무</td> <td>규정 없음 (3천만원 한도 내 허용)</td> <td colspan="2">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채무 허용</td> </tr> </tbody> </table> <p>(*) 기존 3천만원 금액 기준 삭제됨. 개정 규정하에서는 감사계약 체결 전 보유하고 있는 예금, 대출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용이 되지만, 감사계약 기간 동안은 예금, 대출 등은 금지되며, 또한 기존 예금, 대출 등도 금액 증액이 금지됨.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참조)</p> |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감사계약 체결 전 | 감사기간 중 | 주식·출자지분 | 금지 | 현행유지 | | 예금·적금 | 3천만원 한도 내 허용 (예금자보호가 되는 경우 최대 8천만원 미만 허용) | 감사계약 체결 전 가입·차입한 금액 유지 허용 ^(*) | 신규 또는 증액 금지 ^(*) | 증권예탁금 | 담보대출 | 제한없이 허용 | | | 신용대출 | 3천만원 한도 내 허용 | | | 보험 | 신용카드 |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 현행유지 | | 회원권·시설물 이 용권 등 | 표준약관이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경우 제한없이 허용 | 표준약관이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경우 유지 허용 | 신규 또는 증액 금지 | 상기 항목 외 상거래 및 사인간 채권·채무 | 규정 없음 (3천만원 한도 내 허용) |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채무 허용 | |
|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계약 체결 전 | 감사기간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출자지분 | 금지 | 현행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금·적금 | 3천만원 한도 내 허용 (예금자보호가 되는 경우 최대 8천만원 미만 허용) | 감사계약 체결 전 가입·차입한 금액 유지 허용 ^(*) | 신규 또는 증액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권예탁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보대출 | 제한없이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대출 | 3천만원 한도 내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 |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 현행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권·시설물 이 용권 등 | 표준약관이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경우 제한없이 허용 | 표준약관이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경우 유지 허용 | 신규 또는 증액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항목 외 상거래 및 사인간 채권·채무 | 규정 없음 (3천만원 한도 내 허용) |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채무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18 중간박스 내용중</p> | <p>① 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사유에 해당이 된다.</p> | <p>① 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사유에 해당. <u>외감법상 재무제표 작성업무 범위에 들어가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u> 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나.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② ~ ⑩ 내용 동일 | 다.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를 대신해 주는 행위 라.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② ~ ⑩ 내용 동일 |
| 3-18 ~ 3-19 내용삭제 | <p>〈주의!!〉</p> <p>윤리기준 부칙 :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모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비인증업무에 관한 적용례</p> <p>회계법인등은 (1) 제공되는 비인증업무의 결과가 감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자기검토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고 (2)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동 비인증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험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감사의뢰인이 아님)에게 이 윤리기준에서 금지하는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p> <p>(1) 감사의뢰인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감사의뢰인이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2) 감사의뢰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서, 그러한 이해관계가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3) 감사의뢰인과 공동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자매회사)로서, 동 회사와 감사의뢰인이 이들을 지배하는 회사에게 각각 모두 중요한 경우</p> | <p><삭 제></p> |
| 3-19 ~ 3-22 내용삭제 | <p>■ 재무제표 작성관련 감사인의 금지행위 실무사례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p> <p>(상황 1) 감사인과의 의견교환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p> <p>회사가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문의하고 답변해 주는 것은 외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방법</p> | <p><삭 제></p>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p>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의 의견교환은 가능합니다.</p> <p>(상황 2) 회사가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설명자료 등을 제공받아 최종적인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자문에 해당되나요?</p> <p>회계처리방법에 대한 회사의 신중한 검토와 결정 없이 외부감사인의 설명자료 등을 통해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경우는 금지된 자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상황 3) 감사인이 회사에 재무제표와 주석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도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석 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p> <p>감사인이 회사에 일반적인 예시 재무제표와 주석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대상 회사를 위한 구체적인 재무제표와 주석 양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p> <p>〈금지사례〉</p> <p>가. 일반적인 예시 재무제표와 주석 양식을 피감사 회사에 맞도록 수정 및 가공하여 제시 나. 회사의 거래, 사건, 상황에 맞는 특정의 주석 문구를 작성하여 제시 다.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의 일부, 특정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주석의 일부를 대신하여 작성 라. 회사가 숫자만 기재하면 되도록 회사에 맞는 재무제표와 주석 양식을 작성하여 제공</p> |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p>(상황 4)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나 주석 중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이 수정할 사항(수정금액, 수정분개, 주석기재)을 결정하거나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하는 것도 회사를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p> <p>감사과정 중 발견된 오류에 대하여 회사와 의견교환을 하여 회사가 재무제표나 주석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감사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등의 수정여부 또는 수정할 사항(금액, 계정과목, 분개 및 주석기재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러한 수정사항을 재무제표와 주석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p> <p>〈금지사례〉</p> <p>가. 재무제표와 주석의 수정여부를 감사인이 결정</p> <p>나. 수정할 금액과 계정과목, 수정분개, 수정할 주석기재 사항을 감사인이 직접 결정하여 제시</p> <p>다. 수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 로직을 계산하거나 수정금액을 직접 산출하여 제시</p> <p>라. 감사인이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회사가 결정하는 행위</p> <p>〈허용사례〉</p> <p>발견된 오류에 대하여 회사와 의견교환을 하고 수정을 권고</p> <p>(상황 5) 감사인과 회사간 가능한 의견교환이나 감사인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p> <p>감사인이 회사에 참고가 되는 일반적인 교육자료,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사례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인이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통해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회계정책과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는 등 사실상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p> |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p>는 회계처리 자문에 해당합니다. 감사인은 모든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있는 회사가 회계정책과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금지사례〉</p> <p>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제시 나. 회사가 제시하는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 여부 판단 다. 회계처리상 판단과 추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론 제시 라.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또는 확정된 거래나 사건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의견 제시</p> <p>〈허용사례〉</p> <p>가. 회사가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론과 근거를 문서화하여 제시하는 경우, 감사과정 중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수정을 권고 나. 회계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참고자료의 제공</p> <p>(상황 6) 감사인이 회계처리를 위한 계산, 평가, 회계분개에 관하여 일반적인 교육자료나 참고서적을 제공하고 제공된 자료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한지?</p> <p>공개된 일반적인 교육자료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사례 등을 제공하고 제공한 자료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를 위한 제 가정의 수립, 계산, 평가, 회계분개에 대한 설명이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p> <p>〈금지사례〉</p> <p>가.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위한 계산, 평가, 회계분개를 대신하거나 설명제공 나.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위한 가정수립이나 추정과 판단 제시 다.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평가보고서 중 금액 계산에 관여</p> |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p>〈허용사례〉</p> <p>가. 공개된 일반적인 교육자료나 참고서적, 감사인의 회계처리 관련 발간물, 기업회계기준서 사례 제공과 해당 사례에 대한 설명</p> <p>나. 감사 수행과정에서 회사가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수정권고</p> <p>다. 회계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무비율 등의 산출방법 설명</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상황 7) 감사 과정 중 수행한 재계산 검증 결과 등에 대하여 회사와 의견교환을 하는 것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p> </div> <p>감사인이 재계산 검증 등을 수행한 결과에 근거하여 회사와 계산 오류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감사절차입니다. 그러나 감사인이 수행한 재계산 결과나 계산방법을 회사에 제시하고, 그에 따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p> <p>〈금지사례〉</p> <p>감사인이 계산검증을 위해 수행한 계산 결과 또는 계산 로직의 제시</p> <p>〈허용사례〉</p> <p>회사가 제시한 계산내역 중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수정 권고</p> | |
| <p>3-25 ~3-27 ①추가 후</p> | <p>2) 유착위협</p> <p style="text-align: center;"><u><추 가></u></p> | <p>2) 유착위협</p> <p>① 과거에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었던 자가 현재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 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p>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기존번호수정 | <p>① ~ ⑥</p> | <p>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 적용이 필요하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가. 경험이 충분한 인증업무팀을 배정하거나, 나. 해당 인증업무팀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인증업무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다. 해당 인증업무에 대하여 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하는 등의 안전장치 적용</p> </div> <p>다만, 공인회계사법상은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이 감사고객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원 본인이 감사한 감사고객의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로 1년간 이직불가이며, 감사팀원의 경우는 독립성 위협을 평가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의 심각성 판단 후 필요한 경우 안전장치 강구 필요</p> <p>② ~ ⑦</p> |
| <p>3-27 ~ 3-28 ②내용삭제후 기존번호수정</p> | <p>3) 자기검토위협</p> <p>① 내용 동일</p> <p>②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한 회계법인 등의 구성원이 경영의사 결정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에 대해서는, 이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절차 수행 중에 이루어지는 아래의 경우는 독립성을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p> | <p>3) 자기검토위협</p> <p>① 내용 동일</p> <p>② <삭 제></p>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p>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회계원칙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조언을 제공 나. 계정조정문제의 해결 다. 규정에 따른 보고를 위한 정보의 분석과 축적 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지원(예: 국제재무보고기준 등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시키는 것) 마. 공시항목의 초안작성 바. 수정분개의 제안</p> <p>③ ~ ⑤</p> | <p>② ~ ④</p> |
| <p>4-12 ~4-13 일부삭제</p> | <p>■ 사례 1 ■ 대우중공업의 사례: 위헌심판으로 중단된 소송</p> <p>1997년과 98년 대우중공업 등의 재무제표를 부실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산동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법률조항은 ‘감사인 등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허위기재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보고서가 무엇인지,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 아무런 정의나 해설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항은 내용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어떤 행위가 금지 혹은 허용되는지 예측할 수 없고, 국가 형벌권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애매한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개의 사안 이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p> | <p><삭 제></p>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p>■ 사례 2 ■ S법인의 사례 : 회계사의 일부 승소(원심 파기)</p> <p><법원의 판결 일부내용>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과 그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중요 기재사항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당시의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으며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함.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에 따르면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주요 계약서와 회의록 열람, 금융기관 및 변호사 조회서 발송, 회수 및 어음·수표 수불테스트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감사조서에 따르면 감사과정에서 전수검사를 통한 어음·수표의 수불테스트를 했고 미사용 어음·수표에 대해 직접 확인했으며 은행조회를 통해 미회수어음과 수표리스트를 확보해 부외부채를 확인하였다. 또한 S법인이 D금융회사에 할인사용하였다고 장부에 기재한 S은행 어음 3매에 대해 S법인이 아닌 제3자가 할인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자 담당회계사들은 회사에게 차입금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담당회계사는 수정권고를 철회하고 주석에 견질어음으로 표시하기로 했다.</p> | <p><삭 제></p>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
|---|--|-----------------|-----------------|---|----------------------------|--------------------|
| <p>9-4 ~9-5 내용삭제</p> | <p>③ 구체적인 성격, 시기, 범위에 대한 영향</p> <p>1) 감사절차의 성격 (ISA 330 문단 A9~A1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Case 1) 수익과 관련하여, 완전성 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는 통제테스트가, 발생사실 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는 실증절차가 가장 잘 대응하는 것일 것이다.</p> <p>(Case 2) 관련된 통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유형의 특별한 성격으로 인해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 감사인은 실증적 분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내부통제로 인하여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었고 감사인이 이러한 낮은 평가에 기초하여 실증절차를 수행할 계획이라면, 통제테스트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의해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통제가 이루어지는 비교적 통일된 형태의 복잡하지 않은 거래유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p> </div> <p>2) 감사절차의 시기 (ISA 330 문단 A11~14)</p> <table border="1" data-bbox="347 975 1335 1235"> <thead> <tr> <th data-bbox="347 975 855 1023">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은 경우</th> <th data-bbox="855 975 1335 1023">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은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7 1023 855 1235"> <p>가. 기준보다는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에 근접한 시기에 실증절차를 수행</p> <p>나. 불시에 또는 예측불가능한 시기에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 (선택된 지역에 예고 없는 실사 등)</p> </td> <td data-bbox="855 1023 1335 1235"> <p>기준에 실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p> </td> </tr> </tbody> </table> <p>특히, 다음과 같은 특정감사절차의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또는 그 이후에만 수행될 수 있다. (ISA 330 A13)</p>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은 경우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은 경우 | <p>가. 기준보다는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에 근접한 시기에 실증절차를 수행</p> <p>나. 불시에 또는 예측불가능한 시기에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 (선택된 지역에 예고 없는 실사 등)</p> | <p>기준에 실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p> | <p><삭 제></p> |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은 경우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은 경우 | | | | | |
| <p>가. 기준보다는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에 근접한 시기에 실증절차를 수행</p> <p>나. 불시에 또는 예측불가능한 시기에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 (선택된 지역에 예고 없는 실사 등)</p> | <p>기준에 실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p> | | | | |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000080;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가. 재무제표를 회계기록과 대조하는 절차 나.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수정사항을 검토하는 절차 다.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부적절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가 완결되지 않을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p> </div> <p>또한 감사인이 감사절차 시기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위험평가결과 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ISA 330 A14)</p> <div style="border: 1px solid #000080;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가. 관련된 정보의 이용 가능성 (예를 들어 전자 파일은 추후에 삭제될 수 있으며, 관찰 대상이 되는 기업의 어떤 절차는 특정 시기에만 발생할 수 있다) 나. 감사증거가 관련되는 해당 기간이나 일자 다. 위험의 성격 (예를 들어, 이익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해 허위의 판매계약을 만들어 이익을 과대계상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보고기간말에 입수가 가능한 약정을 검토하려 할 것이다)</p> </div> <p>3) 감사절차의 범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의 범위는 중요성, 위험평가 그리고 감사인이 얻고자 하는 확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008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은 경우</th> <th style="background-color: #00008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은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표본규모를 늘리거나 보다 상세한 수준의 실증적 분석절차를 수행</td> <td style="text-align: center;">표본규모를 줄여서 실증절차를 수행</td> </tr> </tbody> </table> <p>다만, 감사절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해 감사절차 자체가 특정 위험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다.</p>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은 경우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은 경우 | 표본규모를 늘리거나 보다 상세한 수준의 실증적 분석절차를 수행 | 표본규모를 줄여서 실증절차를 수행 | |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은 경우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은 경우 | | | | | |
| 표본규모를 늘리거나 보다 상세한 수준의 실증적 분석절차를 수행 | 표본규모를 줄여서 실증절차를 수행 | | | | |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9-15 내용교체 | <p>④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 (ISA 330 문단 2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가.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재무제표를 대조하거나 차이를 조정함. 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한 중요한 분개 및 기타 수정사항에 대하여 검사함.</p> </div> | <p>특히, 다음과 같은 특정감사절차의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또는 그 이후에만 수행될 수 있다. (ISA 330 문단 A13)</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가. 재무제표를 회계기록과 대조하는 절차 나.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서 발생된 수정사항을 검토하는 절차 다.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부적절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가 완결되지 않을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p> </div> |
| 16-15 표내용 일부수정 표 아래에 참조자료표 추가 | <p>①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시 이루어진 <u>조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함</u>. 이러한 테스트를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 다. 내용 동일 ② ~ ③ 내용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u><추 가></u></p> | <p>①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시 이루어진 <u>조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함</u>. (<u>Journal Entry Test: 예시 참조</u>) 이러한 테스트를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 다. 내용 동일 ② ~ ③ 내용 동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p>Journal Entry Test (한공회 교육자료 참조)</p> </div> <p>(Step 1) 전표데이터 완전성 검증 회사로부터 수령한 전표 데이터와 해당 전표가 반영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전표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계정과목별 기초 시산표 잔액에 당기 발생한 전표 금액을 가감한 결과가 기말 시산표 잔액과 동일한지 비교</p>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 #f5f5f5;">전표데이터</th> <th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 #f5f5f5;">시산표</th> <th style="background-color: #f5f5f5;">검증</th> </tr> <tr> <th style="background-color: #f5f5f5;">계정코드</th> <th style="background-color: #f5f5f5;">차변금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f5f5f5;">대변금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f5f5f5;">차이</th> <th style="background-color: #f5f5f5;">기초금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f5f5f5;">기말금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f5f5f5;">기말-기초</th> <th style="background-color: #f5f5f5;">검증</th> </tr> </thead> <tbody> <tr><td>1000101</td><td>XXX</td><td>XXX</td><td>XXX</td><td>XXX</td><td>XXX</td><td>XXX</td><td>-</td></tr> <tr><td>1000211</td><td>XXX</td><td>XXX</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0221</td><td>XXX</td><td>XXX</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0224</td><td>XXX</td><td>XXX</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0226</td><td>XXX</td><td>XXX</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0229</td><td>XXX</td><td>XXX</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0238</td><td>XXX</td><td>XXX</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0239</td><td>XXX</td><td>XXX</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0243</td><td>XXX</td><td>XXX</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0244</td><td>XXX</td><td>XXX</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0245</td><td>XXX</td><td>XXX</td><td>XXX</td><td>-</td><td>XXX</td><td>XXX</td><td>-</td></tr> <tr><td>1000251</td><td>XXX</td><td>XXX</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Step 2) 주요 시나리오 테스트</p> <p>1. 이상분개유형 검토</p> <p>비정상적인 계정 조합이 존재하는 전표를 추출하여 확인하기 위한 절차.</p> <p>특정 계정들과 거래들이 발생한 계정들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계정 조합이 존재하는 전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 예를 들어, 전표상 가공매출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채고자산이 증가하는 전표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거나, 회사에 설정되어 있는 계정과목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비정상적인 계정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거나, 일정 빈도 이하로 사용된 계</p> | 전표데이터 | | | 시산표 | | | 검증 | 계정코드 | 차변금액 | 대변금액 | 차이 | 기초금액 | 기말금액 | 기말-기초 | 검증 | 1000101 | XXX | XXX | XXX | XXX | XXX | XXX | - | 1000211 | XXX | XXX | - | - | - | - | - | 1000221 | XXX | XXX | - | - | - | - | - | 1000224 | XXX | XXX | - | - | - | - | - | 1000226 | XXX | XXX | - | - | - | - | - | 1000229 | XXX | XXX | - | - | - | - | - | 1000238 | XXX | XXX | - | - | - | - | - | 1000239 | XXX | XXX | - | - | - | - | - | 1000243 | XXX | XXX | - | - | - | - | - | 1000244 | XXX | XXX | - | - | - | - | - | 1000245 | XXX | XXX | XXX | - | XXX | XXX | - | 1000251 | XXX | XXX | - | - | - | - | - |
| 전표데이터 | | | 시산표 | | | 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정코드 | 차변금액 | 대변금액 | 차이 | 기초금액 | 기말금액 | 기말-기초 | 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101 | XXX | XXX | XXX | XXX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211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221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224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226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229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238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239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243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244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245 | XXX | XXX | XXX | -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251 | XXX | 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
| | | <p>정, 또는 신규생성된 계정과목이 포함된 전표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표 내역에 포함된 계정과목과 계정과목표 정보를 비교하여 계정과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정의 전표를 추출하거나 일정 빈도 이하로 사용되는 계정 및 신규로 생성된 계정과목이 사용된 전표를 추출하는 테스트.</p> <p>2. 비정상적인 사용자 테스트 인사정보에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작성한 전표를 확인하거나 전표 입력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작성한 전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회사의 인사(HR: Human Resource) 정보에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작성한 전표를 확인하거나 전표입력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작성한 전표를 확인하여, 해당 전표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테스트. (입력자와 승인자가 동일한 전표를 추출하여 테스트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p> <p>3. 결산일 이후 입력전표 검토 전기일과 입력일 비교를 통해 결산일 이후 입력된 전표를 추출하여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사의 일반적인 결산일을 고려하여 결산일 이후에 작성된 전표를 확인하고, 회사의 결산마감일 이후에 입력한 전표를 추출하여 기간귀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테스트.</p> |